

제 호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

2. 대표자

3. 소재지

4. 인력양성 분야

「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